

○ 出席議員(28人)

金 元 泰	黃 泰 植	曹 熙 太
宋 潤 錫	金 星 煥	朴 炆 緒
李 天 揆	李 鍾 萬	李 奉 衡
具 又 石	韓 賢 惠	金 鍾 烈
沈 載 昶	洪 性 煥	俞 南 烈
李 宗 一	鄭 然 宇	金 相 烈
李 康 泌	金 東 暉	蔡 雲 錫
尹 東 鉉	洪 吉 杓	田 炳 萬
李 仁 求	尹 正 鏞	尹 明 奎
權 五 範		

(參照)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안 번호	253	제안일자 : 1993년 11월 26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한다.(’93. 11. 30)  
 - 감사대상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

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1993. 11. 30. (화) (1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지원
운 영 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간 사) 권오범 (위 원)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의 회 사무국	운영 위원회 실	박진양

5. 감사일정

구분	일 정	내 용	비고
준 비 단 계	’93. 11. 25.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 관계 자료수합	
	11. 26.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 27.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11. 29.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3. 11. 30.	* 위원장의 감사 선언 *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 보고 * 사무 감사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93. 12. 3. ~ 12. 21.	* 감사결과보고서작성	
	12. 22. 12. 24.	* 감사결과보고서채택 * 감사결과보고(본회의) *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요령 :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1991. 4. 15. 이후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첨부 : 1.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1부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의회 사무국장 귀하

우리 구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출석(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93. 11. 30. (1일간)
2. 출석장소 : 운영위원회실
3. 출석대상 : 의회사무국장 및 소속계장
4. 출석요구사유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끝.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안 번호	254	제안일자 : 1993년 11월 26일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	-----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3일간으로 한다.('93. 11. 30~'93. 12. 2)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총무국, 재무국, 시민봉사실, 감사실, 문화공보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한다.(9인)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해당 동사무소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2. 감사기간 : 1993. 11. 30.(화)~1993. 12. 2. (목)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	(위원장) 심재창			
재무	(간사) 윤동현	총무국	총무재무	박진양
위원회	(위원)	재무국	위원회	
	김성환, 김유현	시민봉사실	실 및	
	박주서, 유남렬	감사실	해당동	
	윤정용, 이강필	문화공보실	사무소	
	조희태	동사무소		

5. 감사일정

구분	일 정	내 용	비고
준비단계	'93. 11. 25.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 관계 자료수합	
	11. 26.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 27.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11. 29.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	'93. 11. 30.	* 위원장의 감사 선언 *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국별 업무 보고 * 성과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93. 12. 1	-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93. 12. 2	- 동사무소(신공덕동, 상암동, 공덕1동, 서교동)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처리결단과계	'93. 12. 3. ~ 12. 21.	* 감사결과보고서작성	
	12. 22.	* 감사결과보고서채택	
	12. 24.	* 감사결과보고(본회의) *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요령 : 감사는 마포구청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의 각과 및 재무국의 각과의 1991. 4. 15. 이후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

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첨부 : 1.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1부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 구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출석(증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서류 : 별첨
2. 출석일시 : 1993. 11. 30~12. 2 (3일간)
3. 출석장소 : 총무재무위원회실
4. 출석대상 : 총무국장 및 소속과장, 재무국장 및 소속과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해당동장
5. 출석요구사유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끝.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안 번호	255	제출년월일 : 1993년 11월 26일 제안자 : 시민보건의원장
-------	-----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참고함과 동시에 19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3일간으로 한다.  
( '93. 11. 30~'93. 12. 2 )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3. 11. 30(화)~1992. 12. 2 (목)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4. 감사위원회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구우석 (간사) 홍성환 (위원)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시민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민보건위원회실 및 해당동사무소	조항현

5. 감사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준비단계	'93. 11. 25.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11. 26.	* 감사관계 자료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 27.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11. 29.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	일정	내용
실시단계	'93. 11. 30.	* 위원장의 감사 선언 *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 국별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국, 보건소
	'93. 12. 1.	- 동사무소(공덕제2동, 도화제2동, 동교동, 성산제2동)
	'93. 12. 2.	- 시민국, 보건소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치사리결단과계	'93. 12. 3. ~ 12. 21.	* 감사결과보고서작성
	12. 22.	* 감사결과보고서채택
	12. 24.	* 감사결과보고(본회의)
		*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요령: 감사는 시민국의 각과별, 보건소, 동사무소별로 1991. 4. 15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 구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증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별첨
2. 출석일시: 1993. 11. 30~12. 2 (3일간)
3. 출석장소: 시민보건위원회실
4. 출석대상: 시민국장(관계공무원), 보건소장(관계공무원), 해당동장

5. 출석요구사유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끝.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안 번호	256
----------	-----

제안일자 : 1993년 11월 26일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 감사기간은 3일간으로 한다.  
 ('93. 11. 30~'93. 12. 2)  
 -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동사무소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한다.(12인)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1993. 11. 30(화)~1992. 12. 2 (목)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
4. 감사위원회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현덕 (간사) 전병만 (위원) 권오범,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손용호, 윤명규, 이인규, 이충만, 이천규, 채운석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신승관

5. 감사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준비단계	'93. 11. 25.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11. 26.	* 감사 관계 자료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11. 27.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이송	
	11. 29.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	'93. 11. 30.	* 위원장의 감사 선언 *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 * 국별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 필요시 현지확인	
	'93. 12. 1.	-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 필요시 현지확인	
	'93. 12. 2.	-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 필요시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치사리결단과	'93. 12. 3. ~ 12. 21. 12. 22. 12. 24.	* 감사결과보고서작성 * 감사결과보고서채택 * 감사결과보고(본회의) *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요령 : 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 건설국의 각과별로 1991. 4. 15. 이후의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 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 구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증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별첨
2. 출석일시 : 1993. 11. 30~12. 2 (3일간)
3. 출석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4. 출석대상 : 도시정비국장(관계공무원), 건설국장(관계공무원), 필요시 동장.
5. 출석요구사유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46	제출년월일 : 1993년 11월 22일 발 의 자 : 김종열의원의외 7인
----------	-----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의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 17인
  - 선임방법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0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목 적 : 서울특별시마포구의 "1994년도 예산(안)"과 "199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위 원 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7인으로 한다.
3. 선임방법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